

#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The Policy Demand of the Family Sector for Work-Family Balance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 희 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 수 서 지 원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essor* : Cho, Hee-Keum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Assistant Professor* : Seo, Jiwon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icy demands of the family sector for work-family balance, with a focus on the child care and household labor provisions. For empirical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197 dual-income families with at least one young child under age 10 in the metropolitan area vi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provisions for working mothers and fathers were insufficient and unfair, and the ratio of child care provisions offered by familial child care network was high.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provisions for working parents were associated with family structure, working conditions, and demographic variables. Second, household labor provisions for working mothers and fathers were also insufficient and unfair, and the ratio of socialization was high. Third, the level of family satisfaction varied by the level of child care and household labor provisions, respectively, controlling family structure, working conditions,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work-family balance.

**Key Words** :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 맞벌이 가정(dual-income families), 자녀돌봄(child care), 가사노동(household labor), 자녀돌봄 지원망(child care network), 가사노동 사회화(socialization of household labor), 가정생활만족도(family life satisfaction)

\* 교신저자: 서지원 (jiwonseo@knou.ac.kr)

## I. 서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기업,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책 부문에서 기존의 홀벌이 모델을 맞벌이 모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06; 송혜림·서지원, 2008), 특히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균형은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하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가정 균형정책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지 않도록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의 자녀돌봄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여성정책, 가족정책, 인구정책 등 다양한 정책부문에서도 그 의의가 강조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여성가족부, 2006). 또한 OECD 국가의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성차가 10%p 수준인 데 비해 한국사회는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큰 32.0%p의 성차를 보이고 있어(OECD, 2008), 고령화를 대비한 잠재적 인력자원인 여성 노동력 활용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가정 균형은 노동정책의 차원에서 전략적 정책목표로 인식되고 있다(노동부, 2008).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휴가 및 휴직제도, 근로시간 운영 등의 관련 정책을 개선해 온 노력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정책의 목표와 현실 간의 부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원숙연, 2005). 따라서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세계에

서 일-가정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가정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가정 불균형의 눈금을 일-가정 균형의 방향으로 옮김으로써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일-가정 균형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정 영역에서의 자녀돌봄이나 가사노동의 부담은 여전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성별역할 분업에 의해 고착된 가정내 자녀돌봄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일하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 영역에서 이중고를 경험하게 한다(여성가족부, 2006).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는 그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일-가정의 양립에 소요되는 정책적 비용이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내실 있는 시행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직장에서 그러한 일-가정 균형 관련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법적인 기본권으로 보장된 제도의 경우에도 현실적 이용 제약을 지적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숙연, 2005). 지역사회의 경우에도 자녀돌봄의 사회화를 지원하는 보육관련 예산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 왔으며 보육정책의 수혜대상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신뢰할 만한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 자녀 있는 근로자가 돌봄지원

정책의 수혜를 체감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되고 있다(김현숙, 2007).

따라서 일-가정 균형 정책이 실제로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가 사회성원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영역, 직장영역, 지역사회 영역 등에서 일-가정 균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잠재적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다양한 부문의 정책영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일-가정 균형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2008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 수준의 정책적 요구에 관한 통합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일-가정 균형과 관련되는 가정생활을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관련 이슈로 분류하고, 맞벌이 가정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가정생활 관련 영역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이 가정생활의 삶의 질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경험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일-가정 균형의 필요성

일-가정 균형은 직장일과 가정일이라는 두 가지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의 배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정영금, 2006). 개인에게 일과 가정이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영역을 형성하므로 일-가정의 균형을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일과 가정의 두 영역에 걸쳐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생활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시간자원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 정책은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주체인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모성권의 보장 뿐 아니라 나아가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자녀돌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부모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이재인, 2006). 즉,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동권과 함께 양성 간의 차이에 기반을 둔 모성권은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이 여성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소모적인 대립구도를 보여 온 측면이 있었으나(이재인, 2006), 일-가정 균형의 관점은 부모권과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돌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의 실현에 집중해 온 성인지적 관점의 패러다임을 넘어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일-가정 균형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를 충족함으로써 고취된 근로자의 사기와 근무만족도는 기업의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노동부, 2008). 영국정부는 장시간 근로제 등이 근로자의 건강문제 등을 야기하여 생산성을 낮추며 결국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최근 연간근로시간 계약제, 집중노동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탄력적 근무제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김태홍, 2008). 기업이 근

로자의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비용은 숙련근로자의 퇴사율을 낮추어 채용과 훈련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Evans, 2001) 최근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검토되고 있다(노동부, 2008).

궁극적으로 일-가정 균형은 개인과 개별 가정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 기업의 이윤을 증대함은 물론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적 투자는 그간의 일-가정 불균형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투자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높다(송혜림 외, 2007).

## 2. 가정생활영역의 일-가정 균형 요구도

성별역할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인식 수준은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가정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통계청, 2005)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높아진 사회적 인식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의 수행의 실태는 인식수준과 상당한 수준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가사노동 시간의 사용 현황을 보면, 맞벌이 부부가구의 경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28분으로서 부인은 32분만을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남편에 비해 6.5배나 더 긴 시간을 가사노

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다만 <표 1>과 같이 남성의 영역별 가사참여 시간을 보면 협의의 가사 영역(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쇼핑)에 비해 가족돌봄 영역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1999년에 비하여 2004년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율이 향상되어(통계청, 2005) 가사영역에 비해 돌봄영역에 대한 성별분업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남성참여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혜자 10,700명 가운데 200명으로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대한민국정부, 2006)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이용은 여전히 그리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아진 남성의 돌봄참여가 여성에게 치우친 돌봄의 부담을 의미있게 경감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지 않았으며, 한국사회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근로자인 어머니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음을 반영한다.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보고하는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맞벌이 부부 가정의 가사분담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불공평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기은광·이기영, 2003), 한미 양국간 비교 연구(이연숙 외, 2002)에서도 한국의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에 불리한 가사노동 분담수준은 부부간 갈등 뿐 아니라 일-가정 역할 갈등으로 이어져 취업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희, 2001). 일-가족 균형감 수준에 대한 정영금(2006)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부인은 일-가족 균형감 수준을 낮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가족 균형은 가족체계, 직장의 가

족친화제도,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금(2006)의 연구에서 일-가족 균형감은 자녀수, 자녀의 연령, 근무시간, 직장 규모, 복지제도의 시행, 가족원의 지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의 맞벌이 여부 및 성별에 따른 기업의 가족친화 조직문화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 대한 연구(유계숙, 2008)에서는 맞벌이 근로자가 홀벌이 근로자보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오히려 가족문제에 대해 직장 내에서 상관의 지원을 더 적게 받았으며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에 대해서도 덜 자유롭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도를 크게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녀돌봄을 포함한 광의의 가사노동 개념을 사용하여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을 통합적 개념으로 이용한 가사노동 관련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자녀돌봄과 그 외 가사노동 요구도를 구분함으로써 가정생활 영역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녀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전일제 맞벌이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 특성, 가정영역, 지역사회영역, 학교영역, 직장영역, 생활만족도 및 일-가정 균형도 등 7개 영역에서 157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영역의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 특성, 가정영역, 생활만족도/일-가정 균형도 영역에서 필요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2008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에 걸쳐 총 300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었고 22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 부적합한 연구대상이 포함된 23부를 제외한 19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성별 가사노동 시간, 행위자 비율, 행위자 평균시간

성별	남성						여성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전체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구분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연도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2004	1999
계	0:31	0:29	45.8	44.0	1:07	1:08	3:39	3:58	91.4	92.2	3:59	4:19
음식준비	0:06	0:05	15.7	12.1	0:39	0:41	1:30	1:41	83.9	84.9	1:47	1:58
의류관리	0:01	0:01	4.1	3.5	0:28	0:30	0:24	0:28	51.5	54.7	0:46	0:52
청소 및 정리	0:06	0:06	18.7	19.8	0:33	0:33	0:34	0:37	70.5	73.0	0:48	0:50
집 관리	0:04	0:05	8.9	9.6	0:44	0:54	0:04	0:04	12.9	11.7	0:29	0:32
쇼핑	0:03	0:02	8.0	6.4	0:33	0:36	0:14	0:15	36.2	37.4	0:38	0:40
가족돌봄	0:09	0:08	15.1	12.9	1:00	1:05	0:50	0:51	44.1	45.5	1:54	1:53

\* 자료: 통계청(2005)

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I>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요구도는 어떠한가?

I-1.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수행수준은 어떠한가?

I-2. 맞벌이 가정의 특성(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자녀돌봄 수행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 요구도는 어떠한가?

II-1.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 수행수준은 어떠한가?

II-2. 맞벌이 가정의 특성(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가사노동 수행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III-1. 맞벌이 가정의 특성(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을 통제할 때, 자녀돌봄 수행수준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I-2. 맞벌이 가정의 특성(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을 통제할 때, 가사노동 수행수준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 III-1

과 모델 III-2는 각각 다음과 같다.

모델 III-1 :  $FS = f(CC; F, W, D)$ ,

모델 III-2 :  $FS = f(HW; F, W, D)$ ,

FS = 가정생활만족도,

CC = 자녀돌봄 변수,

HW = 가사노동 변수,

F = 가족체계 변수(통제변수),

W = 직장 변수(통제변수),

D = 인구사회학적 변수(통제변수).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에 관련된 변인을 크게 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구분하였다. 우선 가족체계 변수에는 막내자녀 연령, 자녀수가 포함되었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고, 자녀수는 각각 1명, 2명, 3명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직장 변수에는 근로시간과 통근시간 등 시간관련 변수와 함께 직장규모, 주40시간 근무제, 대체인력, 업무연장, 유급휴가일수 등 직장의 여건 및 제도관련 특성이 포함되었다. 직장규모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측정하였고, 통근시간은 하루 평균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을 분단위로 측정하였다.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변수는 매주 또는 격주로 실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업무연장 변수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에 집중되지 않고 연장되는 경우와 주로 근로시간 내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대체인력 변수는 휴가 시 대체인력이 새로 투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유급휴가는 연간 사용한 유급휴가일수로 측정하였

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교육수준, 가계소득, 연령, 지역을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가계소득은 월평균 총 가계소득을 만 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연령은 맞벌이 가정의 부인의 만 나이로 측정하였으며, 지역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 등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16.0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일반적인 변수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 변수와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가정생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일반적 특성

변수	조작적 정의		빈도(%)	평균(SD)
<b>가족체계 변수</b>				
막내자녀 연령	막내자녀의 만 나이(세)		-	4.43(2.61)
자녀수	자녀의 수(명)	1명	78 (39.6)	1.65(.57)
		2명	109 (55.3)	
		3명	10 ( 5.1)	
<b>직장 변수</b>				
근로시간	근로시간(분/주)		-	2881.98(493.82)
통근시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왕복 시간(분/일)		-	78.91(54.00)
직장규모				
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63 (32.0)	-
중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52 (26.4)	-
대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66 (33.5)	-
주40시간 근무제	주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가 격주 또는 매주 시행되는지 여부	시행	171 (86.8)	-
		미시행	26 (13.2)	
대체인력	휴가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지 여부	시행	20 (10.2)	-
		미시행	177 (89.8)	
업무연장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근무시간 이후로 연장되는지 여부	연장 없음	87 (44.2)	-
		연장 있음	110 (55.8)	
유급휴가	유급휴가를 사용한 횟수(일/년)		-	9.40(6.18)
<b>인구사회학적 변수</b>				
교육수준	부인의 최종 학력			
고졸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18.3)	-
전문대졸	전문대 졸업		40 (20.4)	-
대졸	대학교 졸업		73 (37.2)	-
대학원졸	대학원 졸업		47 (24.0)	-
가계소득	가계의 총소득액(만원/월)		-	803.11(1157.90)
연령	부인의 만 나이		-	35.20(3.64)
지역				
서울	서울지역에 거주		89 (45.2)	-
경기 및 인천	경기 및 인천 지역에 거주		108 (54.8)	-

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관련 변수, 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가족체계 변수를 보면, 막내자녀 연령은 4.43세였으며, 자녀수별 분포를 보면 2명인 가정인 가장 많은 55.3%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1명(39.6%), 3명(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당 근로시간은 약 48시간이었으며, 하루 평균 왕복 통근시간에는 약 1시간 19분이 소요되었다. 직장규모는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직장관련 제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직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86.8%), 대체인력은 단지 10.2%의 직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4.2%의 직장에서 업무가 근로시간에만 집중되지 않고 연장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연간 9.4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인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가장 많은 37.2%, 다음으로 대학원졸(24.0%), 전문대졸(20.4%), 고졸이하(18.3%) 순이었으며 조사대상자 절반 이상 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평균연령은 만 35.2세였으며, 조사대상 맞벌이 가정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803만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거주지역별 분포

를 보면 서울(45.2%)과 경기·인천(54.8%)이 유사한 수준이나 경기·인천 지역의 거주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요구도

#### 1) 자녀돌봄 수행수준의 특성

<연구문제 1-1>을 위하여 자녀돌봄 수준을 자녀돌봄 충분도, 자녀돌봄의 공평성, 수행주체별 자녀돌봄 참여도, 자녀돌봄 지원망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 (1) 자녀돌봄 충분도

부인의 자녀돌봄 충분도와 남편의 자녀돌봄 충분도는 각각 2.11점과 1.86점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가정의 부인은 본인이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대체로 불충분한 수준이며 남편의 자녀돌봄 시간은 본인의 자녀돌봄 시간보다 더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녀돌봄 공평성

맞벌이 가정의 부인은 남편과 부인 간의 자녀돌봄 분담의 공평성을 2.63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맞벌이 부부 간의 자녀돌봄 수행에 따른 공평성이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한편, 맞벌이 부인의 61.7%가 남편의 직장일을 부부 간의 자녀돌봄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주요원인으로 들었으며, 이어 부인의 직장일(15.0%),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10.8%) 등의 순으로 자녀돌봄의 공평성 저해 요인을 인식하고 있었다.

##### (3) 수행주체별 자녀돌봄 참여도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수행주체를 크게 남편, 부인, 부부이외로 구분한 후, 전체 자녀돌봄 수행에서 각 주체가 수행하는 자녀돌봄의



〈표 3〉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수준

변수		조작적 정의		빈도(%)	평균(SD)
자녀돌봄 충분도	부인의 자녀돌봄 충분도	부인 스스로 본인이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2.11( .83)
	남편의 자녀돌봄 충분도	남편이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 부인이 인식하는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1.86( .82)
자녀돌봄 공평성	자녀돌봄 공평성	자녀돌봄이 부부 간에 얼마나 공평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부인이 인식하는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2.63(1.13)
	자녀돌봄 불공평성 원인	부부 간의 자녀돌봄 수행의 불공평성을 야기하는 주된 사유	부인의 직장	25 (15.0)	-
			남편의 직장	103 (61.7)	
			자녀학교/보육시설 스케줄	6 ( 3.6)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18 (10.8)	
		기타	15 ( 9.0)		
자녀돌봄 참여도	주체별 자녀돌봄 수행비율	각 주체별로 자녀돌봄을 수행하는 수준이 한 가정에서 수행하는 전체 자녀돌봄(100%)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6인	-	43.80(24.66)
			남편		19.73(13.96)
			부부 이외		36.27(28.68)
	주된 자녀돌봄 수행주체	한 가정에서 수행하는 전체 자녀돌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자녀돌봄을 수행하는 주체의 유형	부인	84 (42.6)	-
			남편	4 ( 2.0)	
			부부 이외	96 (48.7)	
기타			13 ( 6.6)		
자녀돌봄 지원망	이용여부	친정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친지 등 비공식적인 자녀돌봄 지원망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 여부	이용	139 (70.6)	-
			미이용	58 (29.4)	
	주된 돌봄 주체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 내에서 자녀돌봄의 수행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자녀돌봄 수행 주체의 유형	친정부모	57 (41.0)	-
			시부모	47 (33.8)	
			형제자매	12 ( 8.6)	
			친구나 이웃	6 ( 4.3)	
			기타	17 (12.2)	
	이용횟수	친정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친지 등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 횟수(회/월)	-	19.29(9.59)	
	보답	친정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친지 등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에 대해 맞벌이 가정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보상액(만원/월)	-	51.58(33.89)	
	친지보조금제 수요	친정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친지 등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에 의한 자녀돌봄의 수행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수준(5점 리커트 척도)	-	3.54(1.22)	

수행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인이 전체 자녀돌봄 수행에서 가장 높은 43.8% 수준의 자녀돌봄을 수행하였으며, 남편은 가장 낮은 19.7% 수준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자녀돌봄 수행비율은 남편에 비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과 남편 이외의 주체에 의해 자녀돌봄이 수행되는 비율도 3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한 가정 내의 주체별 자녀돌봄 수행비율에 기초하여 가장 주된 자녀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 이외의 수행주체가 주된 자녀돌봄 주체인 경우가 부인이 주된 자녀돌봄 수행주체인 경우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주된 수행주체가 되는 경우는 단 2%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주된 주체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도 6.6% 정도로 나타났다.

#### (4) 자녀돌봄 지원망

자녀돌봄을 위해 친지 등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70.6%로 높은 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된 자녀돌봄 수행 주체는 친정부모, 시부모, 기타, 형제자매, 친구나 이웃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공식적 자녀돌봄 수행주체는 월 19.3회 정도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맞벌이 부부 가정은 월 52만원 정도의 현금으로 보답하고 있었다. 자녀돌봄 지원망에 대한 제도인 친지보조금제에 대해 높은 정책수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돌봄 수행수준의 차이

<연구문제 I-2>를 위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나누고, 부인의 자녀돌봄 충분도, 자녀돌봄 공

평성,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을 중심으로 자녀돌봄 수행수준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녀돌봄 지원망 이용수준과 관련한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자녀돌봄 망 이용, 보답, 친지보조금제도 수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돌봄 충분도, 공평성, 부부에 의한 수행비율의 차이

자녀돌봄 수행수준과 관련 있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자녀돌봄 충분도 및 공평성,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이 각각 가족체계 변수, 직장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자녀돌봄 충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수는 근로시간, 통근시간, 연장근로 등 세 개의 직장변수였다.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은 모두 자녀돌봄 충분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업무 특성이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자녀돌봄 충분도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 변수와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자녀돌봄 충분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녀돌봄 공평성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교육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가족체계 변수와 직장 변수는 자녀돌봄 공평성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은 가족체계 변수 중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변수 가운데 근로시간, 통근시간, 직장규모, 연장근로 등 4개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비해 부부에

〈표 4〉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돌봄 수행수준의 차이

	변수	구분	부인의 자녀돌봄 충분도		자녀돌봄 공평성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	
			평균	r, t, F	평균	r, t, F	평균	r, t, F
가족체계 변수	막내자녀 연령	-	-	.048	-	.043	-	.128 *
	자녀수	1명	2.05	.517	2.73	1.890	57.24	5.824 **
		2명	2.14		2.61		65.87	
3명		2.30	2.00		87.0			
직장 변수	근로시간(주)	-	-	-.207 **	-	.075	-	-.248 **
	통근시간(일)	-	-	-.147 *	-	-.051	-	-.170 *
	직장규모	소기업	2.23	1.120	2.39	2.035	75.95	11.531 ***
		중소기업	2.00		2.79		53.94	
		대기업	2.11		2.70		57.83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2.14	1.002	2.62	-.307	63.48	-.062
		미시행	1.96		2.69		63.85	
	대체인력제도	시행	2.00	-.645	2.90	1.137	59.00	-.742
		미시행	2.13		2.60		64.04	
	연장근로	없음	2.32	4.105 ***	2.60	-.385	67.32	2.097 *
있음		1.85	2.66		58.74			
유급휴가일수	-	-	.073	-	.043	-	-.102	
인구사회학적 변수	교육수준	고졸 이하	2.14	.781	2.23	2.269 *	79.03	5.555 **
		전문대졸	2.21		2.75		61.50	
		대졸	2.15		2.63		62.40	
		대학원졸	1.96		2.85		54.36	
	가계소득	-	-	.009	-	.046	-	-.186 *
	연령	-	-	-.012	-	-.068	-	.069
	지역	서울	2.20	1.230	2.66	.398	62.19	-.591
경기·인천		2.05	2.60		64.62			

\*\*\* p < 0.001, \*\* p < 0.01, \* p < 0.05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특성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교육수준과 가계소득도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대체로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

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도 부부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돌봄 지원망의 차이  
가정생활영역 내에서 친지 등에 의한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자녀돌봄 지원망의 특성과 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

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선 자녀돌봄 지원망의 이용 수준은 각각 직장 변수인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근로시간과 통근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자녀돌봄 지원망을 이용하는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비공식적인 자녀돌봄 지원망을 이

용한 후 맞벌이 가정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지출하는 액수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유의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공식적 돌봄 지원에 대한 보답액이 유의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 변수나 직장 변수는 자녀돌봄 지원망 보답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친지보조금제에 대한 수요는 가족

<표 5>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돌봄 지원망의 차이

	변수	구분	자녀돌봄 지원망 이용(회/월)		자녀돌봄 지원망 보답(만원/월)		친지보조금제 수요	
			평균	r, t, F	평균	r, t, F	평균	r, t, F
가족체계 변수	막내자녀 연령	-	-	.024	-	-.129	-	-.172 *
	자녀수	1명	18.72	.263	50.66	.854	3.78	.043 *
		2명	19.92		51.97		3.34	
		3명	18.33		61.67		3.88	
직장 변수	근로시간(주)	-	-	.176 *	-	.107	-	.008
	통근시간(일)	-	-	.171 *	-	-.028	-	.084
	직장규모	소기업	18.53	.515	43.68	1.345	3.60	.466
		중소기업	20.58		52.95		3.42	
		대기업	18.83		55.98		3.63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19.11	-.571	52.54	.811	3.56	.460
		미시행	20.50		45.56		3.44	
	대체인력 제도	시행	20.67	.517	60.42	.948	3.44	-.366
		미시행	19.16		50.68		3.56	
	연장근로	없음	19.03	-.364	49.59	-.756	3.51	-.367
		있음	19.64		54.12		3.58	
	유급휴가일수	-	-	.039	-	.150	-	.119
인구사회학적 변수	교육수준	고졸 이하	16.35	1.296	31.32	3.636 *	3.39	.385
		전문대졸	18.57		48.39		3.69	
		대졸	19.47		55.10		3.56	
		대학원졸	21.56		61.42		3.49	
	가계소득	-	-	.124	-	.036	-	-.013
	연령	-	-	.000	-	.106	-	-.181 *
	지역	서울	19.10	-.220	54.51	.927	3.64	1.012
경기·인천		19.47	48.99		3.46			

\*\*\* p < 0.001, \*\* p < 0.01, \* p < 0.05

체계 변수 가운데 막내자녀 연령과 자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수가 1명 혹은 3명인 경우가 2명인 경우에 비해 친지보조금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은 친지보조금제 수요와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지보조금제의 정책적 효과가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 요구도

#### 1) 가사노동 수행수준의 특성

<연구문제 II-1>을 수행하고자 가사노동 수행수준을 가사노동 충분도, 공평성, 주체별 가사노동 참여도, 가사서비스 이용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 (1) 가사노동 충분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 충분도는 모두 불충분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가사노동 충분도는 본인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 (2) 가사노동 공평성

가사노동 수행이 부부 간에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가사노동 공평성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공평성의 원인에 대해 절반 정도의 부인이 남편의 직장일이 주된 사유라고 응답(54.5%)하였으며, 이어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23.0%) 역시 상당한 불공평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3) 주체별 가사노동 참여도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부인, 남편, 부부 이외의 세 범주로 나눈 후,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가사노동의

수행비율에서 각 주체가 수행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부인은 전체 가사노동의 절반에 가까운 약 47%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 이외의 수행주체가 전체 가사노동의 약 32% 수준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남편은 19% 수준의 가사노동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수행 주체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 가량(48.0%)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된 주체는 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주된 가사노동 수행자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부 이외의 수행주체가 주된 가사노동 수행주체인 경우도 전체 맞벌이 가정의 38.3%에 해당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 수행주체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나의 주된 수행 주체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는 10.7% 수준이었다.

##### (4) 가사서비스 이용수준

맞벌이 부부 가정의 가사서비스 이용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2% 정도였으며 이들 가사서비스 이용 집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사서비스 유형은 비정기적 가사도우미였으며, 정기적 가사도우미, 입주 가사도우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사서비스의 질 만족도는 보통 정도의 수준을 조금 상회하였으며, 이는 보통 수준의 가사서비스의 비용 만족도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관련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수준의 차이

<연구문제 II-2>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체계 변수, 직장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각

〈표 6〉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 수행수준

변수		조작적 정의	빈도(%)	평균(SD)	
가사노동 충분도	부인의 가사노동 충분도	가사노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 부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2.27( .80)	
	남편의 가사노동 충분도	남편이 가사노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해 부인이 인식하는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1.80( .86)	
가사노동 공평성	가사노동 공평성	가사노동의 수행이 부부 간에 얼마나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는지를 부인이 인식하는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2.46( 1.16)	
	가사노동 불공평성 원인	부부 간의 가사노동 수행의 불공평성을 야기하는 주된 사유	부인의 직장	16 ( 9.7)	-
			남편의 직장	90 (54.5)	
			자녀학교/보육시설 스케줄	2 ( 1.2)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	38 (23.0)	
			기타	19 (11.5)	
가사노동 참여도	주체별 가사노동 수행비율	각 주체별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수준이 한 가정에서 수행하는 전체 가사노동(100%)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인	-	46.69(28.80)
			남편		18.73(16.77)
			부부 이외		31.53(34.18)
	주된 가사노동 수행주체	한 가정에서 수행하는 전체 가사노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유형	부인	94 (48.0)	-
			남편	6 ( 3.1)	
			부부이외	75 (38.3)	
기타			21 (10.7)		
가사 서비스 이용수준	이용 여부	가사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	63 (32.0)	-
			미이용	134 (68.0)	
	서비스 유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는 가사서비스의 유형	입주 가사도우미	16 (25.4)	-
			정기적 가사도우미	19 (30.2)	
			비정기적 가사도우미	24 (38.1)	
			기타	4 ( 6.3)	
질 만족도	가사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	3.31( .92)		
비용 만족도	가사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비용에 대한 만족도(5점 리커트 척도)	-	2.94( .99)		

각 가사노동 수행수준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사노동 충분도는 직장 변수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체계 변수는 가사노동 충분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사노동 공평성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자녀수와 직장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 공평성 수준이 낮았으며, 직장규모가 작은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부부간 가사노동 공평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수행주체별 가사노동 수행비율

에서 남편과 부인의 수행비율을 통합하여 부부에 의한 가사노동 수행비율 변수를 구성하여 부부의 가사노동 수행비율 과 관련 있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체계 변수 중 자녀수, 직장 변수 중 직장규모와 연장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교육수준이 통계적

〈표 7〉 관련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수준의 차이

	변수	구분	부인의 가사노동 충분도		가사노동 공평성		부부에 의한 가사노동 수행비율	
			평균	r, t, F	평균	r, t, F	평균	r, t, F
가족체계 변수	막내자녀 연령	-	-	.028	-	.022	-	-.102
	자녀수	1명	2.25	.156	2.63	1.835 *	68.85	1.673 *
		2명	2.27		2.39		66.39	
		3명	2.40		2.00		87.00	
직장 변수	근로시간(주)	-	-	-.228 **	-	.035	-	-.277 **
	통근시간(일)	-	-	-.078	-	-.027	-	-.104
	직장규모	소기업	2.36	1.318	2.15	3.751 *	81.63	9.096 ***
		중소기업	2.14		2.46		58.03	
		대기업	2.35		2.70		61.59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2.31	1.640	2.45	-.472	69.56	1.238
		미시행	2.04		2.58		60.60	
	대체인력제도	시행	2.20	-.418	2.85	1.580	56.50	-1.646
		미시행	2.28		2.42		69.77	
	연장근로	없음	2.44	3.408 **	2.42	-.630	73.77	2.451 *
		있음	2.06		2.52		61.70	
	유급휴가일수	-	-	.015	-	-.015	-	-.049
	인구사회학 변수	교육수준	고졸 이하	2.28	3.234 *	2.17	1.639	86.25
전문대졸			2.53	2.65		66.88		
대졸			2.30	2.40		70.34		
대학원졸			2.00	2.66		52.07		
가계소득		-	-	-.037	-	.033	-	-.122
연령		-	-	-.004	-	-.107	-	-.130
지역		서울	2.37	1.537	2.35	-1.283	66.69	-.648
	경기·인천	2.19	2.56		69.86			

\*\*\* p < 0.001, \*\* p < 0.01, \* p < 0.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에는 부부에 의한 가사노동 수행비율에 별 차이가 없으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부부에 의한 가사노동 수행비율이 높았다. 소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가사노동 수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가 없는 업무 특성도 부부에 의한 가사노동 수행비율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일관된 관계의 특성이 나타난 것은 아니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부부에 의한 가사노동 수행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

자녀 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수준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고자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0.1보다 크고 VIF 값이 모두 2이하로 나타나 10이하의 수준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1) 자녀돌봄 수행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

<연구문제 III-1>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델 III-1을 분석한 결과는 <표 8>의 둘째 칼럼과 같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때, 부인의 자녀돌봄 충분도, 남편의 자녀돌봄 충분도, 부인의 자녀돌봄 수행비율, 부부 이외의 주체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이 가정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공평성 및 자녀돌봄망이

용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인과 남편의 자녀돌봄 충분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부인의 자녀돌봄 수행비율과 부부 이외의 자녀돌봄 수행비율은 모두 가정생활만족도와 부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자녀돌봄 수행비율이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낮아지며, 부부 이외의 주체에 의한 자녀돌봄 수행비율 역시 가정생활만족도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가운데 직장의 연장근로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장근로가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가정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사노동 수행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효과

<연구문제 III-2>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델 III-2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의 셋째 칼럼과 같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때, 부인의 가사노동 충분도가 유일하게 가정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가사노동 충분도가 높아질수록 가정생활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사노동 관련 변수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가운데 연장근로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생활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수준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변수	모델 III-1		모델 III-2	
	B	S.E	B	S.E
<b>종속변수</b>				
가정생활만족도				
<b>독립변수</b>				
<b>자녀돌봄 변수</b>				
부인의 자녀돌봄 충분도	.310 **	.107		
남편의 자녀돌봄 충분도	.116 **	.115		
자녀돌봄 공평성	-.020	.075		
부인의 자녀돌봄 수행비율	-.014 **	.007		
부부 이외 자녀돌봄 수행비율	-.010 *	.006		
자녀돌봄망 이용여부(기준: 이용)	.100	.160		
<b>가사노동 변수</b>				
부인의 가사노동 충분도			.294 **	.098
남편의 가사노동 충분도			.005	.112
가사노동 공평성			-.022	.085
부인의 가사노동 수행비율			-.007	.007
부부 이외 가사노동 수행비율			-.002	.006
가사서비스 이용여부(기준: 이용)			-.278	.170
<b>가족체계변수(통제)</b>				
막내자녀 연령	.022	.033	.035	.034
<b>직장 변수(통제)</b>				
직장규모(기준: 대기업)				
소기업	.012	.163	.005	.172
중소기업	.145	.162	.125	.169
근로시간	1.30E-5	.000	3.47E-5	.000
통근시간	-.001	.001	-.001	.001
연장근로 (기준: 있음)	.486 **	.147	.490 **	.150
<b>인구사회학적 변수(통제)</b>				
교육수준(기준: 대졸이상)				
고졸 이하	-.378	.197	-.425	.199
전문대졸	-.319	.167	-.259	.174
연령	-.006	.022	.023	.023
지역(기준: 서울)				
경기·인천	.243	.128	.273	.133
가계소득	-3.74E-5	.000	-1.32E-5	.000
상수	3.690 **	1.084	2.874	1.185
Adjusted R <sup>2</sup>	.182		.155	
F	2.659**		3.020**	
N	155		155	

\*\* p <0.01, \* p<0.05

## V. 결론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정생활관련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 실태와 관련변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에서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 한 정책 요구도에 따른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세부과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충분한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시간 보장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가정 균형 정책을 통해 취업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일하면서 가정생활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 과제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되어 왔다(여성가족부, 2006). 특히, 지역사회 영역에서 맞벌이 가정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육아지원시설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이용비용 제고 등을 통해 자녀돌봄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여 직장일과 가정일로부터 오는 이중부담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이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장 영역의 조정을 통해서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일정한 수준의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다양한 휴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융통적인 근로시간 운영 등의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본 연구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가정 내에서의 자녀돌봄과 가사노동 수행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가정생활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상

에서 살펴본 지역사회와 직장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노력은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에 시간을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남성 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모두 충분한 수준으로 자녀돌봄과 가사수행에 대해 시간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의 달성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녀돌봄과 가사노동은 사회화를 통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가사노동 참여와의 조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최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장되고 있는 부모권과의 보장 맥락에도 닿아 있다.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자원의 배분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실제로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높은 직장의 분위기를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로 전환함으로써 개별 근로자가 일-가정에 대한 자원의 균형 있는 배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장내 인식 및 분위기 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의 부부간 공평성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져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 성별역할분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통계청, 2005)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간사용에서 나타나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가사분담의 공평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에서 부부 간의 공평성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이 전일제로 취업하고 있는 젊은 연령층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집단이 표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공평성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하겠다.

이처럼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에서 부부 간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서 남편의 직장일이 부인의 직장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인은 남편에 비해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일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사노동 공평성의 장애요인으로서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가 부인의 직장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 역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의 개발과 지속적 시행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 3.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활성화

가정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의 실태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제로 가까운 친지나 이웃 등 사회적 지원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녀돌봄 지원망의 기대효과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자원으로로서의 사회자본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없었을 경우 생산할 수 없었을 유용한 사회적 산출물을 생산(Lin, 2001)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공식적 자녀돌봄 지원망의 체계적 구축과 더불어 가족과 친지, 지역사회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망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자녀돌봄 지원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공식 자녀돌봄 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녀돌봄의 사회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을 경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의 구축은 잠재적 인력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정부정책목표인 세대통합 및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일-가정 균형정책의 주요 정책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4. 가사노동 사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본 연구의 가사서비스 이용 관련 연구결과에서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대체 등 가사노동 사회화를 통한 가사노동 수행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개별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부부 이외의 주체도 의미 있는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높은 가사노동 사회화 수준에 비해 가사노동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질과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의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보다 생활에 밀착된 세부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선 맞벌이 부부가 시장에서 제공되는 가사서비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일상적인 가사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역시 일-가정 균형을 통해 가정생활만족도르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노동부와 여성부가 공동추진 중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구. 다시일하기센터)’의 주요사업에 포함

된 밑받침서비스와 같은 구체적인 가사서비스 프로그램(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8. 9. 30)은 재취업을 원하고 준비하는 여성의 가정생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가정생활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로 들 수 있겠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가사노동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 역시 요구된다. 최근 스웨덴의 가사노동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논의에서는 가사노동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일자리 창출, 책임 등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손혜경, 2006), 이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스웨덴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된 논의를 살펴보면, 보수정당은 가사노동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보조나 세금감면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좌파정당은 가사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별 가정의 책임에 한정된 것이며 정부의 지원이 결국 전문직 등 상류계층에만 유리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손혜경, 2006). 이제 한국사회도 맞벌이 가정의 가사서비스 유형에 따른 가사서비스 질과 비용에 대한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수혜대상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를 가정생활영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생활영역과 관련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일-가정 균형정책의 세부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이자 근로자인 여성과 남성이 처한 여건을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과 가정생활의 잠재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과의 갈등을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정생활 영역에서 시간자원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 정책과제로 선정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된 가정생활의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의 지원을 통해 일-가정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한 투자를 보다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가정 균형에 관한 정책 방향성에 관한 논의는 미래 한국의 사회정책 부문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숙과 발전을 가져올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1) 기은광, 이기영(2003).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61-75.
-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 9. 30). 경력단절 여성 위해 올해 ‘다시일하기센터’ 50개소 문 열어.
- 3) 김태홍(2008). 일·가정 양립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2008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6.
- 4) 김현숙(2007).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 5)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 6)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 기본계획.
- 7) 손혜경(2006). 스웨덴의 가사노동 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논의. 국제노동브리프 4(12), 72-80.
  - 8) 송혜림, 서지원(2008). 취업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의 “일-가정 균형” 제도 현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2), 191-207.
  - 9) 송혜림, 진미정, 이완정, 박정윤, 서지원 (2007).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가정정책 발전방안. 2007년 대한가정학회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 10) 여성가족부(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11) 원숙연(2005).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둘러싼 수사와 현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4(2), 157-275.
  - 12) 유계숙(2008).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7-37.
  - 13) 이연숙, 이기영, 김외숙, 조희금, 주인숙 (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 14) 이재인(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28(2), 67-88.
  - 15) 정순희(2001).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취업중단 의사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35-45.
  - 16) 정영금(2006).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 균형감과 지원용이도/요구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12-20.
  - 17) 통계청(2005). 2004 생활시간조사.
  - 18) Evans, J.(2001). Firm's contribution to the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 48.
  - 19) Lin, N.(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 OECD(2008). OECD employment outlook.
- 접수일 : 2009년 1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2월 13일